

	산학협동위원회 규정	규정 번호	4-1-22
		제정 일자	2001. 3. 1.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대외협력처

제1조(명칭) 신안산대학교 산학협동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본 위원회는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함으로써 산업체와 대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 본위원회는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학과별 산학협동 위원회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의 심의, 의결
2. 학교 차원의 산학협력사업 개발 및 심의, 의결
3. 기타 대외협력처가 심의를 요청한 안건 심의, 의결 <개정 2023. 3. 30.,2024.3.20.>

제4조(구성) 본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총장, 각 행정부서 보직교수, 각 학과 학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.
2. 총장의 임명에 의하여 약간 명의 산업체 인사와 본교 전임교원은 임명직(위촉) 위원이 될 수 있다.

제5조(분과위원회) 본 위원회는 학과별 분과 위원회(이하“학과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학과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과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.

제6조(임원)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1명
3. 간사 1명

제7조(임원의 선임) 본 위원회의 임원의 선임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2.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.
3. 간사는 본 대학 재직 중인 전임교수 이상인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.

제8조(임기) 본 위원회 위원 및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1.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2. 임명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임명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. (단, 보직과 관련하여 임명 되었을 시에는 보직 임기와 같이 한다.)

제9조(임원의 임무) 1.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.
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3.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한다.

제10조(재정) 본 위원회에 소요되는 제 경비는 본 대학의 예산과 산업체의 찬조금으로 한다.

제11조(회의소집)

1.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원회를 소집한다.
2. 위원장은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2조(의결)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과 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3조(협의사항통보) 간사는 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